



제 43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 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84호)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동물 경매 및 판매 알선·중개 금지	3
2. 동물생산업자 자격요건 신설 및 명의대여 금지	9
3. 동물 판매·전달 과정에서의 대면 확인 규정 신설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정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29.

3. 회 부 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 경매장, 알선·중개업, 펫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재고·물량’ 중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질병·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심화되고 있음. 또한 생산자인 농민·번식업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가격 구조에 종속되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움.

이에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 경매, 알선 및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18호, 제10조제5

항 제5호, 제69조제3항,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동물 경매 또는 판매 알선·중개 등 중간유통 금지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의 정의에서 경매·알선·중개를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동물의 경매 또는 판매 알선·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14. “ <u>동물생산업</u> ”이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 <u>동물수입업</u> ”이란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6. “ <u>동물판매업</u> ”이란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경매, 알선 또는 중개는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17. “ <u>동물장묘업</u> ”이란 반려동물의 사체를 장례, 화장, 봉안, 수목장 등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④ (생 략)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신 설>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신 설>

⑤ . ⑥ (생 략)

제97조(벌칙) ① . ②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의 경매 또는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판매하지-----

2.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판매할 것

3. 동물을 전달할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⑤ -----

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12. (생략) ⑥ (생략)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경매,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한 자 7. ~ 13. (현행 제6호 ~ 제12호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령은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형태를 ‘동물판매업’의 한 유형으로 규정¹⁾하여 동물판매업을 ①일반 동물판매업과 ②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경매장은 검사장비, 격리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동물보호법 별표12 다 9)에 따르면 경매업자를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0]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에서 일반 동물판매업과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을 구분하고 있음.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매장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

인적기준	○ 3명 이상의 운영인력 확보
영업장 시설	○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및 격리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할 것 ○ 접수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비할 것 ○ 준비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을 해당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할 것 ○ 경매실에 경매되는 동물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 ○ 격리실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될 것 ○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일 것 ○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
기타 장비	○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 설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참고로,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16개소의 경매장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³⁾ 운영되고 있음.⁴⁾

그러나 경매장에 대한 허가제도와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경매장이 번식장에서 대량 생산된 동물을 시장에 유통하는 구조적 기능을 함에 따라, 생산시설의 열악한 사육환경, 전염성 질병 확산, 모견·종견 학대 등 동물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⁵⁾⁶⁾

이에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의 경매 또는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생산자 - 판매업자 - 소비자 사이에서 거래를 연결·확대하는 중간유통 구조를 차단하여 반려동물의 대량생산·대량유통을 완화하고 동물학대 발생 요인을 줄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대량생산과 동물학대의 주요 원인이 생산 단계의 사육환경·번식 관행에 있는지, 또는 경매·알선·중개 등 유통 방식에 기인하는

3)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 ④ (생략)

4) 동물판매업(알선·중개) 영업 허가 현황(2024년12월 기준)

시·도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합계
개소	1	1	9	2	1	1	1	1	16

5) “어미 배 갈라 새끼 꺼내 팔았다...” ‘개공장’ 대량생산 금지해야”, 프레시안, 2023.09.05.

6) 과잉 생산·판매와 책임의식·복지 인식이 미흡한 사육 구조로 유기·학대 동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갈등 및 보호조치 재정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국회입법조사처,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이슈와 논점 제1562호), 2019. 3. 6., 4페이지)

것인지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매업은 현행법상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합법적인 영업 형태로서 일정한 시설·인력·관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 바, 경매 방식 자체가 곧바로 대량생산이나 동물학대로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경매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 알선·중개까지 금지하나, 실제로는 광고·플랫폼 운영 등 외형을 통해 알선·중개 행위가 우회될 가능성이 있어 규정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대량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매 또는 알선·중개행위의 금지가 효율적인 정책 대안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문 동물생산업 영업자 중심 생산·분양·양육 체계 구축, 유기동물보호센터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등 반려동물 생산-분양-양육 구조 전환을 통하여 단계적인 반려동물 생산 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전국에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경매장이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경매가 생산자 - 판

매업자 간 거래를 연결하는 제도권 내 유통 경로로 기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 금지는 제도권 유통 위축으로 불법 유통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생산·판매 업계는 경매 방식이 문제라기 보다는 번식 규모 및 생산 단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기하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공장식 대량 생산·판매를 막기 위해서 경매·알선 방식 금지를 요구하는 등 반려동물 경매 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⁷⁾⁸⁾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

7) 동물 경매금지 관련 단체 의견

- (동물보호단체) K-농정협의회(9.12., 10.22., 11.25.) : 일부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는 동물 경매·알선 방식에 대해 생산자와 구매자 간 직접거래 기반 조성 및 시설·인력 기준 강화를 통한 단계적 금지를 제안했으며,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공장식 대량 생산·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경매·알선 방식의 금지를 요구
- (영업단체) 동물 영업자 간담회(11.24.) : 생산자-구매자 간 직접거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판매를 연결하는 기능 소실로 동물 생산·판매의 유통구조 붕괴 우려 의견
- (영업단체)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11.30.) : '투기목적'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이기에 삭제 필요하며, 유기동물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장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해당 법안은 반려동물 산업을 붕괴시키기에 개정안에 반대 의견

8) 언론사 통계조사 시 찬반 대립 첨예(뉴스토마토 설문조사('24.1.11, 1,113명 참여) 중 약 79% 반대, 데일리벳 설문조사('24.1.17, 8,520명 참여) 중 약 67% 찬성)

(단위: 개소)

구분(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17,155	19,285	20,685	22,076	20,575	23,565
허가	생산업	1,690	1,952	2,019	2,086	2,011	2,010
	수입업	75	120	122	125	94	122
	판매업	4,179	4,159	4,010	3,944	3,154	3,114
	경매업	16	17	18	18	17	16
	일반 판매업	4,163	4,142	3,992	3,926	3,137	3,098
	장묘업	44	57	63	68	74	83
등록	전시업	548	664	653	638	541	604
	위탁관리업	3,809	4,406	4,802	5,034	4,820	5,603
	미용업	6,351	7,271	8,222	8,868	8,404	10,172
	운송업	459	656	794	1,313	1,477	1,857

* 출처: 2024년 동물보호 복지 실태조사 결과(농림축산검역본부)

2. 동물생산업자 자격요건 신설 및 명의대여 금지

개정안은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사전 자격검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생산자 명칭 사용 및 명의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3항 단서,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7. (생략)	1. ~ 17. (생략)
<u><신설></u>	18. “생산자”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검증을 거친 사람을 말한다.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 ② (생략)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u><단서 신설></u>	③ ----- ----- ----- -----, 다만, 제1항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69조의2에 따른 생산자 자격검증을 거쳐야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69조의2(동물생산업자의 자격요

건) ① 제69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의3(생산자의 자격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신 설>

제97조(벌칙)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명의대여 금지 등) ① 제69조의2에 따른 자격검증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생산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생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5. ~ 10. (생략) ④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6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u> <u>생산자의 명칭을 사용한 자</u> <u>4의3.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u> <u>다른 사람에게 생산자의 명의를</u> <u>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u> <u>대여한 자 또는 생산자의 명의</u> <u>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u> <u>여받은 자</u> <u>4의4.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한</u> <u>자</u> 5. ~ 1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가. 생산자 자격요건 신설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에 시설·인력 등 물적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규정⁹⁾하고 있을 뿐, 생산업자에 대한 별도의 인

9)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적 자격검증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인력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으면 영업이 가능함. 이로 인해 생산자의 전문성·윤리성·번식관리 역량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유전질환 개체 유통, 사회화가 미흡한 개체 분양 등 생산 단계의 구조적 문제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생산자’ 개념을 신설하고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허가권자가 허가 전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 단계에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생산자 자격검증제도는 현행 허가제에 인적 요건을 추가하는 규제 강화인바, 기존 기준 심사·사후관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보완하는지, 현행 수단 대비 추가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비용·행정부담 증가, 영업 위축·음성화 등 부작용과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소지를 고려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강도가 비례·합리적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제도의 실효성과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의 정비가 요구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첫째, 개정안은 생산자 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처분이 이미 부여된 동물생산업 허가의 효력(허가취소, 영업정지, 변경허가 등)에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집행 단계에서 처분 연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생산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동물생산업 허가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 제69조의3제1항제4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유형과 경중이 다양한 바, 모든 벌금형 이상을 일률적으로 필요적 취소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동 규정은 동물생산업과 직접 관련된 중대한 위반행위로 한정하거나, 필요적 취소가 아닌 재량적 취소·정지 사유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물생산업은 이미 허가영업으로서 시설·인력 기준 심사 및 준수사항 강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격검증제도 도입의 추가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임.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과잉규제¹⁰⁾, 허가·등록

영업 간 형평성 문제, 시험·교육과정 개발 및 예산·인력 등 행정비용 증가 우려를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생산자 명의대여 금지 및 처벌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는 허가 명의를 이용한 영업,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 또는 이른바 ‘명의 세탁’ 관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자격검증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생산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생산자의 명의 사용 및 자격 대여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까지 금지함으로써, 자격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불법·편법营业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위반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생산자 자격검증 제도의 도입·설계와 연계하여 규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명의대여 금지 및 알선·중개 금지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것을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¹¹⁾

10)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는 현재도 영업자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생산업자 자격검증제도 추가 도입은 중복 규제라는 입장임.

1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동물 판매 과정에서의 대면 확인 규정 신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판매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생략)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u>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u> 아니할 것 2. 동물을 <u>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u> <u><신설></u> ⑤ · ⑥ (생략)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 ---- <u>판매하지</u> ----- 2. ----- <u>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판매할 것</u> 3. <u>동물을 전달할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u> ⑤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매자가 거래 과정에서 동물을 직접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동물의 건강 상태, 사육 환경, 개체 특성 등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거래 이후 분쟁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개정안은 동물의 판매 시 구매자의 사전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비대면 거래로 인한 정보 비대칭과 책임 소재 불명확 문제를 완화하고, 반려동물 유통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최근 시행규칙 개정¹²⁾을 통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의 판매를 포함하여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후에만 판매하도록 하고, 대면 확인 이후에 한하여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을 허용하는 등, 인터넷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던 동물복지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면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하위규범상의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여 준수 의무의 규범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도 이해될 수 있음.

1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 다목 1) (2025. 8. 7. 시행) 다. 동물판매업자 1) 동물을 판매(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판매를 포함한다)할 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뒤에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1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제2호가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나.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마.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

바.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2. 개별 기준

가. 동물생산업

1) 일반기준

가)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사육설비의 바닥은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마)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다목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요건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체중 5킬로그램 미만: 20마리 이하

(2)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 10마리 이하

(3) 체중 15킬로그램 이상: 5마리 이하

2) 사육실

가)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사육설비의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동물의 몸길이가 8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2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다)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사육하는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마) 사육설비는 위로 쌓이지 않아야 한다.

바) 사육설비의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3) 분만실

가)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축되어야 한다.

나) 분만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분만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격리실

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의 경우 개별 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 제외한다)이 유리, 플라스틱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는 해당 개별 사육시설이 격리실에 해당하고 분리된 것으로 본다.

나)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다만,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동물수입업

- 1) 사육실과 격리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 2)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 3) 사육설비의 바닥은 지면과 닿아 있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 4)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6) 격리실은 가목4)의 격리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다. 동물판매업

1)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

가)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나)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격리실은 가목4)의 격리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2)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매장 기준

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및 격리실을 각각 구분(선이나 줄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접수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마) 준비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을 해당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 경매실에 경매되는 동물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 삭제 <2025. 8. 7.>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 방식만으로 반려동물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제1호의 공통 기준과 1)의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라. 동물장묘업

-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하거나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 동물수분해장시설의 수분해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수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연소, 건조·멸균분쇄 및 수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분진, 폐수 또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삭제 <2025. 8. 7.>

-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個數) 등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반려동물영업은 생산·판매·미용·훈련·장묘 등 직접 반려동물을 다루는 업종으로 「동물보호법」에서 총 8개의 영업 규정

* (허가)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 (등록) 전시업, 위탁업, 미용업, 운송업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형태 구분>

구분	생산	판매·유통	양육	사후
기능	· 번식 · 사육	· 분양 · 수입	· 미용, 위탁, 운동, 교육·훈련 등	· 사체 처리 · 장례 서비스
업종	· 생산업	· 동물판매(경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 동물미용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운송업	· 동물장묘업

- ◇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주로 동물판매업자, 지인 등 개인, 동물보호센터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 짐

- 반려동물 입양의 약 26%가 동물판매업자에게서 구매,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 동물보호소 등을 통한 입양은 12% 수준

< 반려동물 입양경로 >

*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24)

